

## 「 나의 소원 적금 」 특약(구 하나은행)

1. 개정시행일: 2016. 6. 7

2. 개정내용

개정 전	개정 후	비고
<p><b>나의 소원 적금 (구 하나은행)</b></p> <p><b>제 1 조 약관의 적용</b> 나의 소원 적금(이하 "이 예금"이라 함)의 거래에는 이 특약 외에 『적립식 예금약관(구 하나은행)』, 『예금거래 기본약관(구 하나은행)』을 적용한다.</p> <p><b>제 2조~제 8 조 (내용생략)</b></p> <p><b>제 9조 기타</b> 위 특약 사항은 변경시 변경사유, 변경내용 등을 변경시행일 1개월 전 1개월 동안 은행 홈페이지 및 영업점에 고시한다. 단, 고객에게 불리한 변경 시에는 예금거래 기본약관(구 하나은행) 제21조 제2항 각 호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알리기로 한다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&lt; 부 칙 &gt;</b></p> <p>제 1 조 본 약관은 2013. 1. 11 부터 시행한다. 제 2 조 본 약관은 변경 시행일 이후 신규 가입하는 계좌에 대해서 적용하며, 기 가입자는 기존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.</p>	<p><b>나의 소원 적금</b></p> <p><b>제 1 조 약관의 적용</b> 나의 소원 적금(이하 "이 예금"이라 함)의 거래에는 이 특약 외에 『적립식 예금약관』, 『예금거래 기본약관』을 적용합니다.</p> <p><b>제 2조~제 8 조 (좌동)</b></p> <p><b>제 9조 기타</b> 위 특약 사항은 변경시 변경사유, 변경내용 등을 변경시행일 1개월 전 1개월 동안 은행 홈페이지 및 영업점에 고시합니다. 단, 고객에게 불리한 변경 시에는 예금거래 기본약관 제21조 제2항 각 호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알리기로 합니다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&lt; 삭제 &gt;</b></p>	<p>통합약관에 따른 약관명 수정</p> <p>기본약관통일에 따른 용어 정비</p> <p>기본약관통일에 따른 용어 정비</p> <p>부칙 삭제</p>

3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약관 적용 여부: 적용